

강릉시의회 공고 제2023-41호

「강릉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릉시의회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30일

강릉시 의회의장

강릉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의 범위에 대안교육기관을 신설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활성화하고,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대안교육기관의 정의(안 제2조)
- 나. 대안교육기관 지원(안 제9조)
- 다. 용어 및 자구 수정(안 제10조,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릉시의회의장

(참조: 의회사무국 행정전문위원/☎033-640-4033)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기타 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25522)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의회 의회사무국
- 이메일: jhyoon93@korea.kr
- 팩 스: 033-640-4070

- 붙임 1. 강릉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1부. 끝.

[붙임 1]

강릉시 조례 제 호

강릉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를 각각 제3조부터 제8조까지로 한다.

제4조(종전의 제3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7조(종전의 제6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8조를 11조로 하고, 제9조를 제10조로 하며, 제2조 및 제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2.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9조(대안교육기관 지원) 시장은 대안교육기관이 제5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종전의 제9조)제1항 중 “지원센터”를 “지원센터 및 대안교육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원센터가”를 “지원센터 및 대안교육

기관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지원센터는”을 “지원센터 및 대안교육기관의 장은”으로 한다.

제11조(종전의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청소년 지원을”을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 지원을”로,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라”를 “위하여”로, “등 청소년 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과 긴밀히 연계·협력한다”를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
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
에 따라 교육지원청, 경찰서, 사
회단체, 청소년지원기관 등 청
소년 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과 긴밀히 연계·협력한다.

<신 설>

제9조(지도·점검 등)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센터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 여부를 확
인하고 관계 공무원이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경비를 지원받은 지
원센터가 지원목적에 위반하였
을 경우에 지원금의 교부결정
변경·취소하거나 교부한 지원
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③ 지원센터는 지도·점검 시
지적된 사항을 즉시 시정조치

제11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① -----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지원을 ----- 위하여 --

----- 등과 긴
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협력체계 구
축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협의체
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지도·점검 등) ① -----

----- 지원
센터 및 대안교육기관-----

-----.

② ----- 지원
센터 및 대안교육기관이 -----

-----.

③ 지원센터 및 대안교육기관의
장은 -----

하야야 한다.

-----.

[붙임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 법규명: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제·개정안 내용	의 건	비 고